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8104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4. 1.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등 17개 법인(이하 '컨소시엄'이라고 한다)과 공동으로 [redacted]시 [redacted]구 C 일원 26,886.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1. 23.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237.99㎡(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의 대금 전액 739,917,371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본문[1]에 따라 취득세[2] 29,596,690원(= 739,917,371원[3] × 4%[4]), 지방교육세[5] 2,959,660원{ = 739,917,371원 × (4% - 2%) × 20%}, 농어촌특별세[6] 1,479,830원(= 739,917,371원 × 2% × 10%)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컨소시엄 회원사 중 하나인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237.99㎡(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3. 1. 17. 대금 전액 751,926,883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본문[7]에 따라 취득세 30,077,070원[8](= 751,926,883원 × 4%), 지방교육세 3,007,700원[9]{ = 751,926,883원 × (4% - 2%)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
5) 세법 제150조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지방교육세는 취득물건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취득세 면제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외에는 각주 1과 동일하다.
8) 각주 2 내지 4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20%}, 농어촌특별세 1,503,850원[10](= 751,926,883원 × 2% × 10%)을 면제받았다.

마. 컨소시엄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redacted]시 [redacted]구 E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4. 2. 3.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4. 2. 14.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F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한 위 건물 전부는 2014. 3. 11.(이하 '이 사건 지정일'이라고 한다) 벤처기업육성법 제18조 제1항 전문[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1항 본문[1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벤처기업집적시설[13] 지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각주 7의 조항에 따라 취득세 74,903,380원(= 2,675,120,806원[14] × 2.8%[15]), 지방교육세[16] 4,280,190원{ = 2,675,120,806원 × (2.8% - 2%) × 20%}, 농어촌특별세[17] 5,350,240원(= 2,675,120,806원 × 2% × 10%)을 면제받았다.

사. 원고는 2018. 11. 16.(이하 '이 사건 임대일'이라고 한다)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5%에 해당하는 부분을 2020. 11. 15.까지 임대

9) 각주 5 참조
10) 각주 6 참조
11)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12) 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3) 벤처기업육성법 제2조 제4항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4) 세법 제10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은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과세표준이다.
15) 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
16) 각주 5 참조
17) 각주 6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하였다.

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사무실의 45%(이하 '이 사건 추징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벤처기업육성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이하 '이 사건 기산일'이라고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나.항 및 라.항 기재 세액 중 취득세 26,853,190원{ = (29,596,690원 + 30,077,070원) × 45%}, 지방교육세 2,685,310원{ = (2,959,660원 + 3,007,700원) × 45%}, 농어촌특별세 1,342,650원{ = (1,479,830원 + 1,503,850원) × 45%}과 취득세의 무신고가산세[18] 5,370,630원(= 26,853,190원 × 20%[19]), 농어촌특별세의 무신고가산세[20] 268,530원(= 1,342,650원 × 20%[21]), 취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22] 1,395,020원{ = (26,853,190원 × 0.03%/일[23] × 14일[24]) + (26,853,190원 ×

18) 세법 제20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는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서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2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각주 19의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관계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 전문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3)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4) 이 사건 추징 부동산 임대일인 2018. 11. 16.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보다 짧아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0.025%/일[25] × 191일[26])}, 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39,500원{ = (2,685,310원 × 0.03%/일 × 14일) + (2,685,310원 × 0.025%/일 × 191일)},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27] 72,570원{ = (1,342,650원 × 0.03%/일[28] × 56일[29]) + (1,342,650원 × 0.025%/일[30] × 149일[31])}을 추징(별지 목록 1항 기재 처분)하고,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바.항 기재 세액 중 취득세 33,706,520원(= 74,903,380원 × 45%), 지방교육세 1,926,080원(= 4,208,190원 × 45%), 농어촌특별세 2,407,600원(= 5,350,240원 × 45%), 취득세의 무신고가산세 6,741,300원(= 33,706,520원 × 20%), 취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751,050원{ = (33,706,520원 × 0.03%/일 × 14일) + (33,706,520원 × 0.025%/일 × 191일)}, 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50원{ = (1,926,080원 × 0.03%/일 × 14일) + (1,926,080원 × 0.025%/일 × 191일)},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30,130원{ = (2,407,600원 × 0.03%/일 × 56일) + (2,407,600원 × 0.025%/일 × 149일))}을 추징(별지 목록 2항 기재 처분)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1항과 2항 기재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5) 각주 23의 조항은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라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는데,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 조항의 이자율을 잘못 적용하였는바, 결과적으로 각주 23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적법하다.

26) 2019. 1. 1.부터 2019. 7. 10.까지의 기간

27)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8)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는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9) 2018. 11. 16.부터 2019. 2. 11.까지의 기간보다 짧아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바 없다.

30) 각주 28의 조항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라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는데, 부칙 제9조는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 조항의 이자율을 잘못 적용하였는바, 결과적으로 각주 28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적법하다.

31) 2019. 2. 12.부터 2019. 7. 10.까지의 기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2. 이 사건 처분사유

가. 관계 법령

1의 나.항 및 라.항 기재 법률 조항은 취득세 면제 대상을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추징조항은 추징사유를 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③ 벤처기업육성법 제17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④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법 제1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32]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일 것", 제2호는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33]이 사용하게 할 것", 제3호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2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계속 입주하고 있는 기업"을, 제2호는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제3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제4호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제5호는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각 규정하고 있다.

33) 각주 31의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나. 이 사건 기산일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5. 1.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벤처기업 9개[34]가 입주하고 있는 사실, 위 기업들 사용의 연면적은 합계 16,361.81㎡로 이 사건 건물 전체 연면적 22,640,62㎡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 위 건물의 나머지 연면적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산일은 2014. 5. 1. 이전으로서 이 사건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은 벤처기업육성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 다른 용도로 사용

소외 회사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회사는 구 중소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35],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36]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벤처기업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37]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38]의 벤처기업이 아니고, 원고가 2018. 11. 16. 이 사건 추징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위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라. 소결

이 사건 임대일이 이 사건 기산일부터 5년 이내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징조항 중 ④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4) 주식회사 H, 원고,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인바, 위 기업들이 모두 벤처기업육성법 제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5)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6)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3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38)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3.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추징조항 중 ①에 관한 것으로서 ④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을 초과하는 8년간 추징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징조항 중 ① 내지 ④의 관계는 선택적 즉,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이므로, 각 추징기간의 합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당국이 이 사건 추징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징조항은 "추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재량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추징조항 중 ④의 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 임대일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위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9

별지

1. 취득세 26,853,190원, 지방교육세 2,685,310원, 농어촌특별세 1,342,650원, 취득세의 무신고가산세 5,370,630원, 농어촌특별세의 무신고가산세 268,530원, 취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395,020원, 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39,500원,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72,570원
2. 취득세 33,706,520원, 지방교육세 1,926,080원, 농어촌특별세 2,407,600원, 취득세의 무신고가산세 6,741,300원, 취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751,050원, 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50원,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30,130원. 끝.